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기관등의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등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5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예술 활동 계약의 일방적 해지·해제 금지 등(안 제2조 및 제7조)	3
2. 예술인 권리보장 책무 주체 확대 등(안 제5조)	12
3.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1조 및 제42조 신설)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나.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3조).
- 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2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예술 활동 계약의 일방적 해지·해제 금지 등(안 제2조 및 제7조)

가. 개정안 요지

-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며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가목).
- 예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안 제2조제4호가목 신설).
 -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안 제2조제4호나목 신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관련 사업(안 제2조제4호다목 신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정의에 제7조제3항 위반 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제10호가목).
-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서는 안됨(안 제7조제3항 신설).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됨(안 제13조제1항제5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u>국가</u> 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 <u>정치적</u> 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가. ----- ----- <u>국민의</u> ----- ----- <u>정치</u> <u>적 소양을</u>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예술지원사업”이란 <u>국가기</u>	4. -----

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
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
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5. ~ 9. (생략)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
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
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
체의 사업

나. 국가기관등 또는 제6호
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관련 사업

5. ~ 9. (현행과 같음)

10. -----

-----.

가. <u>제7조제2항을</u> 위반한 행 위	가. <u>제7조제2항 또는 제3항</u> <u>을</u> -----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과</u> <u>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u> <u>정당한 이유 없이</u> <u>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u> <u>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u> <u>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u> <u>여서는 아니 된다.</u>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 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 정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5. ----- ----- -----

또는 <u>변경하거나</u> 그 이행과 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u>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u> <u>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u> 등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제2호1)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 1)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술지원사업”으로 정의함.

○ 또한, 동법 제7조²⁾는 공무원과 예술지원·교육기관에 소속된 자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성과 전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3조³⁾는 국가기관등, 예술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2) 「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

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

○ 개정안은 “예술인”을 ‘국가’가 아닌 ‘국민’의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소양 제고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예술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해제·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불공정 행위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 법이 보호하는 예술 활동의 범위에 예술인이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계약 관계에 기초한 예술 활동에서도 예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술인의 창작·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과의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라도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⁴⁾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와 이행과정에서 거래조건에 없거나 거래조건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등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4) 「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조(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불이익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조건에 없거나 거래조건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소
양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재정의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예술인지원사업에 예술활동 계약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예술활
동 관련 계약에서의 계약 내용 불이행·일방적 해지를 금지행
위·불공정행위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내
용과 관련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예술인지원사업의 정의 확대) 지원사업은 예산·보조금 등 반
대급부 없이 일방적인 사업으로,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모
든 예술 활동 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예술활동 계약 불이행·해지 금지 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사
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는 점, 계약 해제 또
는 해지는 성격상 일방행위이고 민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
에 해당한다는 점, 계약 불이행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 해
제 또는 해지 권한 행사가 예술의 자유 침해 또는 불공정행위
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예술인에게 부당하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계약해
제·해지하는 행위 등 계약 관계에서의 부당행위는 이미 동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현행법 조항과 중복되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음.

2. 예술인 권리보장 책무 주체 확대 등(안 제5조)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의 책무를 가짐.

-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안 제5조제1항)
- 예술 검열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예술지원사업결정에서의 차별 금지(안 제5조제2항)
-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안 제5조제3항)
-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시책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 예술인 관련 정책 결정·시행 시 정책결정과정에 예술인 참여(안 제5조제5항)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 시책 마련(안 제5조제6항)
-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안 제5조제7항)
-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금지(안 제5조제8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 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 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 보호하여야-----.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 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 ----- -----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 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 ----- ----- -----.
<신 설>	④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 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 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	⑤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u>국가기관등은</u>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u>국가기관등은</u>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u><신 설></u>	----- ----- -----. ⑥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u>----- ----- -----. ⑦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u>----- ----- -----. ⑧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민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다. 검토사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조⁵⁾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5) 「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예술의 검열 금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예술지원사업 결정에서의 차별 금지, 문화다양성의 보장,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 참여,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예방 및 피해자 구제 시책 마련,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 제5조가 규정하는 책무 준수의 주체를 예술지원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에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지원기관에게도 책무를 부여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예술지원기관에게 예술인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등과 예술지원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관이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1조 및 제42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함(안 제41조 신설).
-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신설).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및 일방적 계약 해지·해제(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제9조) 위반
 - 예술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제13조제1항) 위반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 금지(제14조제4항) 위반
 - 신고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38조제1항) 위반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표현의 자유 및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예술인의

<u><신 설></u> <u>제41조(과태료) (생 략)</u>	<u>표현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형법」 제123조 또는 제31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u> <u>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7조제2항 또는 3항을 위반한 자</u> <u>2. 제9조를 위반한 자</u> <u>3.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u> <u>4.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자</u> <u>5.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u> <u>제43조(과태료) (현행 제41조와 같음)</u>
---	---

다. 검토사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6)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6)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신고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인보호관이 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사의뢰, 행정처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구제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⁷⁾,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3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원을 중단하거나 배제⁸⁾할 수 있으며,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⁹⁾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벌칙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권리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예술인권리보장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형법」 상 직권남용죄(제123조) 및 업무방해죄(제314조)¹⁰⁾로 이미 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동법에 재규정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고, 형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를 동법에 행정형벌로 중복 규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과 법정형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¹¹⁾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유사 취지의 동법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0)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1) 현행법의 제정 심사 당시 법무부(2019.11.)에서도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 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형벌로 중복 규정시 행위의 위법성과 법정형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술 분야의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별도의 형벌을 신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유사 취지 동법 법률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심사경과
김승수의원	2024.6.25. (제2200904호)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소위 계류
강유정의원	2024.6.28. (제2201155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조항 신설	소위 계류
김재원의원	2024.7.3. (제2201330호)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소위 계류
조계원의원	2025.3.25. (제2209321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원회 회부 (미상정)

문 의 처

02)6788-5384